

이 조례 및 규칙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
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
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6월 27 일

서 울 특 별 시 중 구 청 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설치·운영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등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구청장의 책무 (안 제1조~3조)
- 나.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- 다.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라. 특별회계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- 마. 특별회계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(안 제7조)
- 바.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)
- 사.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: 건축과장,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, 중구청(예관동), 문의전화 : 3396-5793, 팩스 : 3396-8785, 메일 : moon9797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붙 임 :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축법」 제87조의3 및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5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특별회계의 설치)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진이나 화재로 인한 건축물 사고를 예방하고, 노후 건축물 및 공사장 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 전반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안전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관리·운용)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·운용한다.

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.

제4조(세입)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「건축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5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
3. 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·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의 15
4.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

제5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, 인건비, 조사·연구비
2. 「서울특별시 건축 조례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
3.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

제6조(일시차입)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잉여금의 처리)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(移入)한다.

제8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